

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심사 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5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5. 4.
- 다. 상정일자 : 2004. 5. 4.

(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건설과장 김용현

- 나. 제안사유

- 이 조례는 주민의 공동노력(자부담)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(이하 "관리청"이라 한다)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하였으나
- 지방자치시대 및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 및 경제의 환경변화, 주민의식결여로 공동노력(자부담) 사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.

- 다. 주요내용

- 조례안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본 폐지조례안은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고령화 및 경제의 환경 변화등으로 공동노력(자부담)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관리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2003년도 각종 조례개정 및 폐지 검토시 집행부와 검토 되었던 폐지 조례안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- "생략"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